

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(태안)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문

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(태안) 청년인턴(보존과학)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심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2024년 3월 6일
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

1. 서류전형 합격자

지원코드	채용분야	서류전형 합격자
인턴22	청년인턴 (보존과학)	보존-01 최○○(990○), 보존-02 이○○(744○), 보존-03 박○○(216○), 보존-04 김○○(203○)

※ 괄호 안은 휴대전화 뒷번호

2.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

○ 제출서류

- <별지서식 제5호>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- <별지서식 제6호>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

○ 제출기간: 2024. 3. 6.(수) ~ 3. 7.(목)

○ 제출방법: 채용담당자 이메일(seojinkim@korea.kr)

3. 면접일시 및 장소

○ 일시: 2024. 3. 11.(월), 14:00 ~ 16:00

○ 장소: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세미나실(충남 태안군 신진대교길 94-33)

※ 찾아오시는 길: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참조

4. 면접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얼굴이 나와 있는 증명서)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면접대기실에 도착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(수험표는 당일 배부)
- 지정된 면접일시에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면접일정 및 장소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변경공고 및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.

5. 최종합격자 발표: 2024. 3. 13.(수), 문화재청, 나라일터 공지 및 개별통지

※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
6. 면접관련 문의: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(☎ 041-419-7026)

<별지서식 제5호> 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성명	생년월일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4. . .

성명 : (서명)

문화재청장 귀하

